

2022년 고시금액 적용기준

2022.01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시 간 급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일 급 (8시간기준)	66,800원	68,720원	69,760원	73,280원
월환산액 (209시간기준)	1,745,150원	1,795,310원	1,822,480원	1,914,440원
수습근로자 (3월이내)	7,515원(시급) 1,570,635원(월)	7,731원(시급) 1,615,779원(월)	7,848원(시급) 1,640,232원(월)	8,244원(시급) 1,722,996원(월)
최저임금산입 (현금지급 복리후생비)	122,160원	89,765원	54,674원	38,288원
최저임금산입 (정기상여금)	436,287원	359,062원	273,372원	191,444원

- ▶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10% 감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함(단 단순노무자 제외)>
- ▶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 기준 209시간 : 주당 유급휴가 8시간 포함 근무할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최고 보상」 기준 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최저 (1일)	66,800원(최저임금) (59,556원)	68,720원(최저임금) (61,734원)	69,760원	73,280원(최저임금) (64,629원)
최고 (1일)	214,402원	222,244원	226,191원	232,664원

- ▶ 적용대상 보험급여 : 최고(휴업, 장애, 유족, 상병보상연금), 최저(장해, 유족)
- ▶ 2021년 이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9,160원×8시간)을 최저보상기준 금액으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고시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진폐고시임금 (1일)	119,112원 68전	123,468원 93전	125,661원 86전	129,257원 55전

■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의비 최저·최고 보상」 기준 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최 고	15,554,290원	15,867,020원	16,334,840원	16,775,750원
최 하	11,097,760원	11,438,960원	11,729,120원	12,082,820원

▶ 평균임금 120일분 산정금액과 최고·최하 금액과 비교 지급

■ 연도 별 「평균임금액 자동 증감률」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비 고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24 (4.24% 상승)	1.0366 (3.66% 상승)	1.028 (1.95% 상승)	1.028 (2.83% 상승)	적용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함.
소비자 물가변동률	1.0165 (1.65% 상승)	1.0113 (1.13% 상승)	1.0036 (0.36% 상승)	1.0115 (1.15% 상승)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41,660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자영업자 I (신규가입자: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가입자)	1등급 1,820,000	1등급 1,820,000	1등급 1,820,000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2등급 2,080,000	2등급 2,08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3등급 2,340,000	3등급 2,34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4등급 2,600,000	4등급 2,60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5등급 2,860,000	5등급 2,86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6등급 3,120,000	6등급 3,12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7등급 3,380,000	7등급 3,380,000	7등급 3,380,000
자영업자 II (기존가입자:고용안정, 직업능력 가입자)	1,920,000원(월)	2,600,000원(월)	2,600,000원(월)	2,600,000원(월)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 2,600,000원

■ 「중.소사업자」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20.1.1 ~ 2020.12.31		2021.1.1 ~ 2021.12.31		2022.1.1 ~ 2022.12.31	
	보수액(월)	평균임금(월)	보수액(월)	평균임금(월)	보수액(월)	평균임금(월)
1급	2,061,600원	68,720원	2,092,800원	69,760원	2,198,400원	73,280원
2급	2,480,301원	82,677원	2,519,430원	83,981원	2,632,800원	87,760원
3급	2,899,002원	96,633원	2,946,060원	98,202원	3,067,500원	102,250원
4급	3,317,703원	110,590원	3,372,690원	112,423원	3,502,200원	116,740원
5급	3,736,404원	124,547원	3,799,320원	126,644원	3,936,900원	131,230원
6급	4,155,105원	138,504원	4,225,950원	140,865원	4,371,600원	145,720원
7급	4,573,806원	152,460원	4,652,580원	155,086원	4,806,300원	160,210원
8급	4,992,507원	166,417원	5,079,210원	169,307원	5,241,000원	174,700원
9급	5,411,208원	180,374원	5,505,840원	183,528원	5,675,700원	189,190원
10급	5,829,909원	194,330원	5,932,470원	197,749원	6,110,400원	203,680원
11급	6,248,610원	208,287원	6,359,100원	211,970원	6,545,100원	218,170원
12급	6,667,320원	222,244원	6,785,730원	226,191원	6,979,800원	232,660원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시행령 제122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300인 미만 사업주(임의)

■ 「출산전후급여」에 관한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상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지급기간 -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120일) 미만의 경우 : 일수로 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	382,770원	382,770원	382,770원

■ 건설업 「월평균 보수」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월평균임금	3,906,885원	4,226,652원	4,330,442원	4,438,528원

■ 건설업 「노무비율 및 보험료율」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무비율	보험료율	노무비율	보험료율	노무비율	보험료율	노무비율	보험료율
건설업	27% (일반건설공사) 30% (하도급공사)	36/1000 (출퇴근재해 1.5% 제외)	27% (일반건설공사) 30% (하도급공사)	36/1000 (출퇴근재해 1.3% 제외)	27% (일반건설공사) 30% (하도급공사)	36/1000 (출퇴근재해 1.0% 제외)	27% (일반건설공사) 30% (하도급공사)	36/1000 (출퇴근재해 1.0% 제외)
별 목 노무비율	10,830원 (1㎡)		10,718원 (1㎡)		10,704원 (1㎡)		10,716원 (1㎡)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	382,770원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예술인			

- ▶ 월평균보수는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으로 산정
-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월 평균 근무시간	2021년 월지원금액(1인당)		2022년 월지원금액(1인당)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600,000원	1,200,000원	600,000원	1,380,000원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550,000원	1,050,000원	550,000원	1,210,000원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400,000원	750,000원	400,000원	860,000원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300,000원	450,000원	300,000원	520,000원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지원금액
39명 이하	월 200만원
40명 이상 59명 이하	월 280만원
60명 이상 79명 이하	월 360만원
80명 이상 99명 이하	월 440만원
100명 이상	월 520만원

3.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

과목					내역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

▶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 「무급가족종사자」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 연도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2,460,280	2,363,438	2,504,063	1,931,567	2,089,330	2,536,717	2,269,463	2,043,783	2,184,311	1,933,002	2,338,922
부산	2,541,649	2,174,026	2,575,543	1,914,440	2,016,762	2,485,205	2,008,521	2,085,580	2,037,394	2,056,576	2,141,691
대구	2,335,451	2,138,219	1,986,030	1,914,440	2,130,126	2,170,326	1,953,441	1,914,440	2,036,326	1,962,594	2,023,513
인천	2,599,916	2,157,118	2,406,730	1,914,440	2,178,508	2,634,774	2,144,540	1,961,070	2,089,094	2,394,167	2,051,715
광주	2,729,312	2,223,501	2,557,198	1,919,616	2,033,863	2,187,677	2,631,102	1,976,030	2,067,596	1,994,333	2,186,003
대전	2,555,819	2,134,890	2,188,074	1,914,440	1,950,785	2,310,000	2,143,243	1,927,789	2,148,313	1,914,440	2,328,945
울산	2,837,507	2,230,601	2,472,470	1,914,440	2,471,093	2,613,934	2,102,648	1,972,343	1,982,101	1,914,440	2,015,205
경기	2,708,403	2,279,679	2,151,358	1,930,366	2,197,347	2,546,358	2,134,400	1,956,899	2,028,243	2,124,719	2,275,428
강원	2,506,521	1,990,920	2,148,534	1,970,253	2,010,851	2,341,682	2,316,563	1,914,440	2,088,169	1,999,241	2,126,339
충북	3,070,453	2,090,752	2,098,254	1,918,464	2,165,039	2,376,282	2,126,698	1,951,920	2,082,966	2,015,357	2,093,007
충남	2,953,227	2,136,635	2,370,021	1,914,440	2,277,111	2,702,526	2,190,175	2,059,219	2,041,244	1,945,176	2,064,926
전북	2,686,046	2,000,572	2,332,089	1,932,722	1,929,978	2,180,878	2,022,106	1,914,440	2,153,594	2,012,456	2,144,446
전남	2,688,053	2,024,673	2,112,375	1,958,016	2,286,342	2,402,077	1,977,434	2,213,850	2,121,019	1,998,138	2,134,993
경북	2,694,994	2,059,388	1,958,602	1,915,594	1,968,540	2,350,444	2,110,832	1,914,440	2,033,304	2,083,376	2,041,945
경남	2,811,059	2,143,534	2,205,046	1,914,440	2,000,699	2,483,633	2,445,103	1,914,440	2,029,310	1,938,723	2,224,626
제주	2,446,597	1,968,893	2,488,515	2,049,282	1,914,440	2,555,567	1,914,440	2,313,011	2,036,051	1,939,119	2,114,679
세종	2,293,945	1,941,311	2,018,312	1,914,440	1,914,440	2,070,197	2,140,390	2,072,418	1,967,675	1,914,440	1,990,298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 업 분 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393,540
B. 광업	2,820,68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313,42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551,561
F. 건설업	4,438,528
J. 정보통신업	2,667,279
K. 금융 및 보험업	2,495,86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08,433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942,764
U. 국제 및 외국기관	3,290,284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이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로 산정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 명/월)

구분 \ 년	2019. 1. 1 ~2019.12.31	2020. 1. 1 ~2020.12.31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기준 (적용)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3.1%	3.1%	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부담금납부 : 100명 이상]	50명 이상 [부담금납부 : 100명 이상]	50명 이상 [부담금납부 : 100명 이상]	50명 이상 [부담금납부 : 100명 이상]
부담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1,048,000원 (3/4 이상)	1,078,000원 (3/4 이상)	1,094,000원 (3/4 이상)	1,149,000원 (3/4 이상)
	1,078,000원 (3/4 이상)	1,110,880원 (62,880원 가산)	1/2 이상 ~3/4 미만 (6%가산)	1,142,680원 (64,680원 가산)
	1/2 이상 ~3/4 미만 (6%가산)	1,159,640원 (65,640원 가산)	1/2 이상 ~3/4 미만 (6%가산)	1,159,640원 (65,640원 가산)
	1/2 이상 ~3/4 미만 (6%가산)	1,217,940원 (68,940원 가산)	1/2 이상 ~3/4 미만 (6%가산)	1,217,940원 (68,940원 가산)
	1/4 이상 ~1/2 미만 (20%가산)	1,257,600원 (209,600원 가산)	1/4 이상 ~1/2 미만 (20%가산)	1,293,600원 (215,600원 가산)
가산한 부담 기초액)	1/4 이상 ~1/2 미만 (20%가산)	1,312,800원 (218,800원 가산)	1/4 이상 ~1/2 미만 (20%가산)	1,312,800원 (218,800원 가산)
	1/4 이상 ~1/2 미만 (20%가산)	1,378,800원 (229,800원 가산)	1/4 이상 ~1/2 미만 (20%가산)	1,378,800원 (229,800원 가산)
	1/4 미만 (40%가산)	1,467,200원 (419,200원 가산)	1/4 미만 (40%가산)	1,509,200원 (431,200원 가산)
	1/4 미만 (40%가산)	1,531,600원 (437,600원 가산)	1/4 미만 (40%가산)	1,531,600원 (437,600원 가산)
부담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1/4 미만 (40%가산)	1,608,600원 (459,600원 가산)	1/4 미만 (40%가산)	1,608,600원 (459,600원 가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1,745,150원 (697,150원 가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1,795,310원 (717,310원 가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1,822,480원 (728,480원 가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1,822,480원 (728,480원 가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1,917,440원 (768,440원 가산)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1,917,440원 (768,440원 가산)
부담금 부과에 대한 특례	100명 미만 :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			
신고기한	2022. 1. 1 ~ 2022.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분할납부	1기 : 1월 31일, 2기 : 4월 30일, 3기 : 7월31일, 4기 : 10월 31일			
일시납부	100분의 3 공제			

▶ 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화재,분실,도난 등)하기 곤란한 사업주인 경우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일반 요율			사 업 종 류	일반 요율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1. 광업				4. 건 설 업	36	36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185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57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8	8
2. 제조업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8		
식료품 제조업	16	16	16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18	18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11	11	통 신 업	9	9	9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20	20	6. 임 업	58	58	58
출판·인쇄·제본업	10	10	10	7. 어 업	28	28	2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13	13	8. 농 업	20	20	20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9. 기타의 사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7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8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3	13	13	기타의 각종사업	9	9	9
금속제련업	10	10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6	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6	6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4	24	24	교육서비스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12	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8	8	도소매·음식·숙박업	8	8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7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9	9
				0. 금융 및 보험업	6	6	6
* 해외파견자	14	14	14	* 출퇴근재해	1.3	1.0	1.0

■ 「통상근로계수」

[시행일]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00. 7. 1 ~ 현재	비 고
통상근로계수	73 / 100	☞ 일당×통상근로계수 1개월 미만자(단1-3개월미만자 적용 : 이의신청에 의거 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시행일]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4. 8. 1. ~2017. 7.27		2017. 7.28. ~2023.12.31		비 고										
간호사	1-4등급 의료기관	간병1등급	82,190원	1-4등급 의료기관	간병1등급	82,190원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table><tr><td>1:1 이하인 경우</td><td>간병료의 100분의 100</td></tr><tr><td>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td><td>간병료의 100분의 85</td></tr><tr><td>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td><td>간병료의 100분의 65</td></tr><tr><td>2:1 이상인 경우</td><td>간병료의 100분의 50</td></tr></table>	1:1 이하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100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85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65	2:1 이상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50
		1:1 이하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100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85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65														
2:1 이상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50														
간병2등급	71,000원	간병2등급	71,000원												
간병3등급	59,810원	간병3등급	59,810원												
간호 조무사	5-7등급 의료기관	간병1등급	80,670원	5-7등급 의료기관	간병1등급	80,670원									
		간병2등급	69,480원		간병2등급	69,480원									
		간병3등급	58,290원		간병3등급	58,290원									
전문 간병인		간병 1등급	67,140원		간병 1등급	67,140원									
		간병 2등급	55,950원		간병 2등급	55,950원									
		간병 3등급	44,760원		간병 3등급	44,760원									
가족 ·기타 간병인		간병 1등급	61,750원		간병 1등급	61,750원									
		간병 2등급	51,460원		간병 2등급	51,460원									
		간병 3등급	41,170원		간병 3등급	41,170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료를 받은 경우 간병인이 2명이상 동시간병 : 20 % 가산 지급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인이 2명 이상 중시간병 : 20 % 가산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시행일]2022년 1월 1일

(단위 : 원)

구분 \ 년	2017. 1. 1. ~ 2017. 7. 27.	2017. 7. 28. ~ 2020.12.31.	2021. 1. 1. ~ 2023.12.31.
상시간병 (1일)	41,170원	41,170원	44,760원 <전문간병인> 41,170원 <가족·기타간병인>
수시간병 (1일)	27,450원	27,450원	29,840원 <전문간병인> 27,450원 <가족·기타간병인>

▶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 자 (장해 1~3급)

■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연령	지 급 액	비 고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지급대상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 산정.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연령	지 급 액	비 고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지급대상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거나,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연령	지 급 액	비 고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지급대상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요 율	3/100,000	3/100,000	3/100,000	3/100,000	☞ 납부대상 :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장, 건설업 본사)

■ 고용보험 「보험요율」 및 부담주체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13.07.01. ~ 2019.09.30.			2019.10.01. ~ 2022.06.30			2022.07.01. ~ 현재		
		근로자	사업주	소계	근로자	사업주	소계	근로자	사업주	소계
실 업 급 여		0.65%	0.65%	1.3%	0.8%	0.8%	1.6%	0.9%	0.9%	1.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0.25%	-	0.25%	0.25%	-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0.45%	-	0.45%	0.45%	-	0.45%	0.45%
	150인 이상 ~1000미만 기업	-	0.65%	0.65%	-	0.65%	0.65%	-	0.6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0.85%	-	0.85%	0.85%	-	0.85%	0.85%

■ 임금채권 「부담금비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구분 \ 년	2018년	2019년~2021년	2022년~2024년
요 율	0.6/1,000	0.6/1,000	0.6/1,000

▶ 부담금 경감기준 :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③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④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 중간정산 지급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